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정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24.

발의의원 : 김정태 의원, 최상국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타법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
 - 안 제1조 :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→ 삭제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 <u>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</u>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삭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